

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(개정법령 중심)

건설공사발주자* 또는 자기공사자**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계약주체가 기존의 시공사에서 발주자(자기공사자 포함)로 변경

* (건설공사발주자)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발주자 등

** (자기공사자)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는 자

1 기술지도 대상 건설현장

○(관련 규정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

○(기술지도 대상)

토목공사 외 건설공사	공사금액*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
토목공사	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
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	
※기술지도 제외 사업장	①공사기간 1개월 미만 ②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공사(제주도 제외) ③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④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

* 공사금액 :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았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

2 계약체결 및 준비서류

○(기술지도기관 선정)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접속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목록 click → '산재예방/산재보상' 메뉴 click → '건설'로 검색

○(계약체결 시점) 공사착공일 전날까지 체결

○(비치서류) 기술지도계약서 및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현장에 비치

3 법 위반행위 제재

○ (발주자) 공사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→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○ (지도기관) 계약체결 후 기술지도 미실시 →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 적용시점 등

○(적용시점) '22.8.18 이후 착공되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

※ '22. 8. 17. 이전 착공된 경우,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 체결